



국내동향

대법원,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한 경우, 세부내용 일치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15일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하면서 세부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경우, 표현·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영화 ‘실미도’가 실제 684부대원 훈련병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미도 684부대’ 유족 61명은 영화 ‘실미도’가 684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하고 용공주의자로 그려내 부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감독 강우석 씨와

한맥영화사, 시네마서비스를 대상으로 200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도 “훈련병을 범죄자나 사회나약자로 표현한 것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일부 사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재개발 관련 사업자 비판글 유포는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는 지난 7월 14일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용역업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유포해 기소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 모 씨와 신 모 씨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용역업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정비용역업체인 P사의 실소 유주가 서방과 두목 김태촌 등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P사는 용산참사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다”는 내용의 주간지 기사를 추진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들이 비판글을 퍼뜨린 것에는 사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시행업체 선정 문제 등 재개발을 둘러싼 사안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추진위원회가 몇몇 결성돼 상호 감시·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S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시물 삭제요구 그대로 수용 않을 것”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드림엑스 등 주요 포털 운영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는 지난 6월 28일 정책결정을 통해 회원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물 삭제요청을 해 온 사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해 올 경우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왔던 포털들이 앞으로는 자체적 판단에 의해 삭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KISO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정보 이외의 ‘기타 사회적 유해성 정보’인 경우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법

물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

처분이라 판단한 상황이라며, 최종 판결에 의해 시정요구의 성격이 확정될 때까지 게시물 게시자의 불복수단 등 권리 제한을 시정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심의 절차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KISO는 다만, 법적 근거가 분명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판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미납사실 실명 공표’는 명예훼손

지난 6월 4일 서울남부지법은 홍 모 씨가 자신의 등록금 미납사실을 공연히 공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대학 총장과 서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빈부가 드러날 수 있는 제적이유와 실명을 거론해 공표한 행위는 위법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 측은 2007년 석사 과정에 입학한 홍 씨가 2007년 2학기 와 다음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8년 5월 제적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홍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사실 공표의 목적은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주목적인데, 그러한 예방효과는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비위행위로 인한 제적이 아니라 경제력 유무나 빈부가 드러날 수 있는 이유로 인한 제적의 경우, 그 공표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적이유와 실명을 거론해 공표한 행위는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등록금 2회 미납한 대학원생 두 명이 제적 처리되었으므로, 재학생들은 등록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학이 관행적으로 징계 대상이 된 학생에 대해 실명으로 공표가 이루어져 왔던 점, 공표사실에 허위가 없었던 점, 교내 게시판에 게시해 공표 범위가 제한적인 점, 교육 목적 및 예방효과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크고,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또 “사전검열금지 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에 한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

적 표현행위와 관련이 없고, 해당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해서 예술활동의 창의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합헌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심의를 담당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자율기구이므로 사전검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조대현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청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율기구라 볼 수 없어 협회의 사전심의로도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에의동양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도쿄지방법원, “니혼 텔레비전의 뱀장어 산지 위장 보도는 적법”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6월 9일 니혼(日本) 텔레비전이 식품판매를 하는 자신의 회사가 장어의 산지를 속였다는 보도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나이카(나이카)가 니혼 텔레비전을 상대로 6,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니혼 텔레비전은 충분한 취재를 통하여 보도한 사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니혼 텔레비전은 해당 회사의 뱀장어에 대해 DNA 감정 등 두 종류의 감정을 실시했으며, 감정 결과를 통해 나이카가 아치현산(愛知縣産)으로 판매한 뱀장어 구이가 중국과 대만산

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신문협회보(6월 22일자)가 보도한 판결에 의하면, 니혼 텔레비전은 2008년 12월에 방송된 보도특집 프로그램 <개국 55년 보도특별기획 ACTION 일본을 움직이는 프로젝트, 2008년 최종장(最終章) 스페셜>에서 중국산 뱀장어 구이를 가 고시마산(鹿兒島産)으로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다른 식품판매회사의 전 회장이 나이카의 이름을 사용, 산지를 조작한 뱀장어 구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보도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인한 손해액이 약 3억 엔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통신판매 프로그램의 건강기구 효과 조작 의혹, 진실 아니므로 손해배상 필요

텔레비전 아시히(朝日)가 자사의 통신판매 프로그램이 건강기구의 효과를 조작했다고 보도한 「슈칸젠다이, 週刊現代」(발행원 고단샤, 講談社)를 상대로 1억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4월 8일 도쿄고등법원은 33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5월 11일자 일본신문협회보가 보도한 판결에 의하면, 2007년 7월 3회에 걸쳐 게재된 이 기사는, 텔레비전 ‘로데오보이

2’(로데오보이2) 통신판매 프로그램이 승마형 운동기구 ‘로데오보이2’(로데오보이2)의 감량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식사 제한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근거가 없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기타 사정에 의한 진실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쌍방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오사카지법, 허위광고에 대한 잡지사와 광고회사의 과실책임 인정

파친코 잡지의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한 남성이 출판사와 광고회사를 상대로 255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이례적으로 출판사의 광고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25일자 일본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에 대해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된다”며 양사에 합계 약 77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출판사 「미래인터내셔널」은 지난 2007년 3월에 발매한 ‘월간 파친코 공략의 이면(裏面)’에 파친코 공략법을 설명한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원고인 이 남성은 광고를 보고 광고주에게 210만 엔을 맡겼고, 이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반환을 요구

했다. 그러나 광고주는 잠적하여 소재불명이 되었다.

재판부는 “잡지나 광고회사는 진실성을 조사, 확인하여 독자들에게 허위광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

고 “광고내용이 진실이면 파친코 점포의 영업에 치명적인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동일한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을 출판사 측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 지적재산권 담당 고법 “진실성의 증명 없는 맨션 붕괴위험 보도는 명예훼손”

일본의 지적재산권 담당 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텔레비전 아사히(朝日)가 보도한 맨션 붕괴 위험 등의 내용은 구체적 인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한 채 보도되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33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해당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신문협회보(6월 8일자)에 의하면, 재판부는 텔레비전 아사히가 보도한 요코하마 시(横浜市)에 건설한 맨션 관련 내용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아리카와(荒川) 건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맨션의 완성 예상

도를 사전 양해 없이 방송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의하면, 텔레비전 아사히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방송된 ‘스-파-모-닝’ (슈퍼모닝)과 2001년 5월에 방송된 ‘스-파-J 채널’ (슈퍼J채널) 등에서 모두 6회에 걸쳐 건설업자가 입안한 요코하마 시의 맨션은 경사지에 위험한 성토(盛土)를 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비전 아사히는 지난 6월 7일 상고했다.

경찰의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보도로 입은 피해, 현(縣)이 배상하라

일본 마츠야마(松山)지방법원은 지난 4월 14일 폭행으로 사망한 고교생의 유족이 “신문사들이 경찰의 잘못된 설명에 근거하여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에히메 현(愛媛縣)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은 원고에게 33만 엔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신문협회보(5월 18일자)에 보도된 판결에 의하면, 이 고교생은 2006년 마츠야마 시내에서 얼굴과 배에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타임(타이밍, 1대의 싸움이라는 속어)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설명하여, 신문들은 사망원인을 “고교생 친구 간의 싸움”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설명한 내용이라면 기자들은 해당 학생이 1대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은 에히메 현이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 “여자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교사의 실명공개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6월 4일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오키나와 현(沖縄縣)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자신 관련 사건을 경찰이 실명으로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키나와 현을 상대로 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교사는 지난 2007년 3월 현(縣)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혐의로 체포된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은 보도기관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자 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나하(那覇)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공

립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의 가해자인 원고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며 실명공개에 정당성을 인정했고, 2심인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 나하지부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결정했다.

원고 측은 실명보도를 한 NHK, 류큐(琉球)방송, 류큐아사히(琉球朝日)방송, 오키나와 텔레비전 등 언론 4개사도 제소했으나 1,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2009년 2월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동향]

대법원의 법정 촬영금지 결정으로 법정 촬영 관련 논란 다시 일어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 미국에서의 법정 장면 촬영과 공개에 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다.

해당 동영상은 법정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동성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변론을 펼치는 장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실제 법정의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라 법정을 재연한 것이며, 영상이 재연물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알 수 있다.

The News Media & The Law(2010, 겨울호)에 의하면 이 재현물은 캘리포니아의 두 영화 제작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재판을 녹화하여 공개하려는 판사의 계획이 대법원에 의해 저지당하자 만들어진 것이다.

동성애자이며 이 동영상의 제작자인 Ireland 와 Ainsworth는 “동영상 제작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일견 이해하고 있으나, 재판은 공적인 것이고 이번 사건을 비공개로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 관련 재판이 있던 날, Vaughn Walker 판사는 해당 재판 장면을 녹화하여 이를 서부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 대법원은 이를 금지시켰다.

법정에서의 카메라 사용 관련 논란은 새로운 화제는 아니다. 미국 내 여러 주법원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민사와 형사 사건에 있어 항소법원까지는 법정 내에서의 카메라 사용을 허용해 왔다. 연방법원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실정이다. 제2, 제9연방순회항소법원과 뉴욕연방법원은 민사소송에 한해 녹화를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연방법원은 대체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9연방순회법원의 사법위원회가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지역 내 15개 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없는 민사재판에 한해 촬영을 시범적으로 허가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규정 개정에 대해 제9연방순회법원의 Alex Kozinski 법원장은 일반 대중이 법정 안에

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건은 AP통신, ABC, NBC, CBS, FOX 등의 연합언론사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와 관련한 Perry v. Schwarzenegger 사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서 발생했다. Kozinski 법원장은 파일럿 프로그램에 이 사건이 방영되는 것을 허용했고, Walker 판사는 샌프란시스코, 패서디나, 시애틀, 포틀랜드, 브루클린의 연방법원이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중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Walker 판사의 요청을 허가한 Kozinski 법원장의 결정은 사법기구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John Roberts 대법원장이 대표로 있는 연방기구인 미국 사법협회는 Kozinski 법원장에게 재판의 녹화 장면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사법 정책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취지의 경고 서한을 보냈다. Kozinski 법원장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강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전에 연방법원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받으나,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공방은 일단락되었다.

이들간의 일시적 유보 기간이 지난 뒤, 대법원은 5대 4의 의견으로 해당 사건 판결까지 방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정은 그러나 법정 안에서의 카메라 사용에 대한 언급보다는 Kozinski 법원장의 미국 사법협회 지침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개정 자체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법 개정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공중에 고지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 중계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Breyer, John Paul Stevens, Ruth Bader Ginsburg, Sonia Sotomayor 대법관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것이 이번 촬영 유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법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미국법원, “정부계정 사용한 이메일도 ‘사적인 문서’로 볼 수 있다” 메일의 내용에 따라 판단 정보공개법 귀속 여부 가려야

판사가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석유회사 중역에게 이메일, 검사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법무부 메일 계정을 이용해 보낸 이메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사와 교육협회에 메일을 보낸 이메일, 법원은 이같은 이메일도 ‘사적인’ 내용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The News Media & The Law(2010. 겨울호)는 공무원들이 정부메일 계정을 이용해 보낸 사적인 이메일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주로 주법이 공문서를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서가 생성, 저장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언론자유연합의 Peter Sche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공문서 판단은 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전화, 컴퓨터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정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대법원 또한 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된 AP 통신 v. 캔터베리 사건에서 비록 법원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사적인 내용의 이메일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은 Elliott Spike Maynard 판사와 Massey Energy의 CEO인 Don Blackenship이 주고받은 이메일 중 13개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이 중 5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 Massey Energy가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문제의 이메일이 Maynard 판사의 공적인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법이 공문서를 ‘그 내용이 공무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인에 의해 준비, 소유, 획득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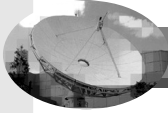
이후 Massey Energy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어 Maynard 판사는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법원이 그러한 관계가 공적인 관심사일 지언정 공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메일은 공문

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많은 논란을 불렀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자유인권협회는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모임과 함께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Franklin Crabtree 자유인권협회 총장은 이번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이어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과 미시간 주 고등법원도 정부 계정을 통해 사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Convertino v. 미국 법무부 사건에서 Richard Convertino 전 주검사는 테러 관련 재판 진행 도중 법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루트를 알아보기 위해 보조 검사인 Jonathan Tukul의 이메일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Royce Lamberth 판사는 Tukul이 개인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일은 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보호는 연방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실시했다.

또 미시건 주 고등법원도 Howell 교육협회 v. Howell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협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 공문서인지를 다루는 소송에서 비슷한 결론에 내렸다. 고등법원 합의부는 이메일을 공문서로 보려면 해당 메일이 정부의 서버를 통해 전달되고, 그 내용이 공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메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용 지침을 어겼다 하더라도 해당 메일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메일을 공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를 메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주에서는 문제가 되는 이메일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Scheer는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어려운 것이다.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메일을 누군가가 보아야한다는 것인데, 누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가. 메일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려면, 사적인 영역이 어디서부터인지 어떻게 선을 긋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 언론과 유명 작가의 서평 관련 법정 소송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Daily Telegraph」에 게재된 ‘The Seven Days in the Art World’ (Sarah Thornton 저)에 대한 서평이 논란이 되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008년 11월 1일자 「Daily Telegraph」 28면에 게재된 서평은 작가이자 언론인인 Lynn Barber가 작성한 것이지만 그녀가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책의 저자인 Thornton 박사가 문제를 삼은 것은 전체 서평 중 몇 단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성찰적 민속지학(reflexive ethnography)’ 방법론을 활용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저자가 그들에 대해 서술한 것을 미리 읽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정할 권리 역시 가진다는 것으로 저널리즘에서 우리는 이것을 ‘copy approval(출판 승인)’와 ‘disapprove(승인 반대)’로 구분한다”라는 부분이다.

사실 성찰적 민속지학이란 사회학자가 그들의 연구에서 당연시한 추론과정 자체를 문제시함으로써 연구 방법론에 대한 좀 더 깊은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어떻게 증거를 선택하여 제시·해석하고, 그 적합성을 결정하며, 행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술적 용어이다. 따라서 Barber가 이해한 저널리즘에서의 인터뷰 방법과는 명백하게 다른 부분이다.

또한 Lynn Barber의 서평에는 Thornton 박사가 인터뷰했다고 주장하는 25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허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었다. “저자는 25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과 몇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를 책에 담았다고 했다. 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믿었다. 하지만, 해당 리스트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고, 내 기억으로는 그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법정 소송이 진행되던 2009년 9월 26일에 「Telegraph」는 자발적으로 해당 서평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Barber는

Thornton의 저서와 관련해 그녀와 인터뷰한 적이 없음을 고백했는데, 사과문에는 두 사람 사이에 약 30분 가량의 전화 인터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Lynn Barber는 여전히 자신은 Thornton 박사와 출판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다. Thornton 박사는 “재정적 사정으로 인해 무료 변호사를 찾아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과 영국 전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사가 사실 관계 여부의 착오를 바로 잡는데 1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충격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법정 소송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2010년 1월 20일, 1심 법원인 High Court의 Chales Gray 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 전문 판사로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Charles Gray 경은 “해당 서평 작성자가 이해하는 ‘성찰적 민속지학’의 개념은 책의 저자인 Thornton 박사가 인터뷰 과정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이론과는 명백하게 다른 것으로 이는 서평 작성자의 중대한 실수라고 판단되며, 대중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언론은 명백한 사실에 의한 내용만을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Daily Telegraph」 측은 곧바로 상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시했으며, 약 5개월간의 법정심리 끝에 지난 2010년 6월 16일 발표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Daily Telegraph」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다. 재판 책임을 맡은 Tugendhat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은 그 내용의 ‘상당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elegraph」에 게재된 서평 중 일부 내용이 저자인 Thornton 박사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해석되었고, 인터뷰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Telegraph」 측

의 손을 들어주었다.

「Daily Telegraph」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명예훼손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단지

언론에서 사용된 한두 가지 단어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일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임을 법원이 인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 ‘세계 최악의 선수’라는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

지난 2008년 4월 23일, 영국의 각 언론사들은 프로 스포츠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54연패(連敗)의 주인공 Robert Dee(영국 테니스 선수)의 첫 승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그의 초라했던 프로 경력으로 인해 그의 승리를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주화했고 희화화하기도 했으며, 일부 매체는 3년간에 걸친 그의 연속 패배 신기록이 깨진 것이 오히려 아쉽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일간지 「Daily Telegraph」는 ‘세계 최악의 테니스 프로선수가 마침내 승리했다’, ‘세계 최악의 영국인 선수의 돌풍’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1면과 스포츠 섹션 첫 번째 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했다.

「Daily Telegraph」는 해당 기사에서 “프로 테니스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 54연패를 기록했지만, 스페인에서 열린 프로 대회 1라운드에서 17세의 미국 선수를 이기면서 최악의 기록 행진은 멈췄다. 하지만 그는 역사적인 첫 승에도 불구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해 결국 첫 승에만 만족해야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사는 Robert Dee의 학창 시절은 사였던 Paul Henderson과의 인터뷰를 포함하는 후반부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Paul은 인터뷰에서 “나는 지난 수년간 Robert가 세계 곳곳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테니스 투어 참가비용에만 수십만 파운드가 소모되었을 것이다”라며 Robert의 테니스 선수로서의 경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Robert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페인의 La Manga에 다시 베이스캠프를 차렸다는 소식과 함께 ‘Federer(스위스 출신의 프로 테니스 선수, 당시 세계 랭킹 1위), 조심해라’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당사자인 Robert Dee는 언론사들이 객관적인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는 점과 이러한 보도가 향후 자신의 잠재적인 코치로서의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비하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을 법원에 고소하였다. 「BBC」, 「Daily Mail」과 「Guardian」 등 언론사들은 곧바로 Robert Dee의 고소 취하를 위해 합의를 하였고, 사과문 게재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비 명목으로 수만 파운드를 제공함으로써 법정공방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Daily Telegraph」는 ‘최악의 선수’라는 표현은 그의 프로 경력으로 볼 때 그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어구에 불과하며, 이러한 것은 정치인을 풍자하는 내용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의 내용은 전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허위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소송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Telegraph」 측은 Robert에게 최악의 선수라는 수식어가 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Boris Becker, John Lloyd 등 전직 테니스 스타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법정 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국 대법원은 사건 발생 2년 만인 2010년 4월 29일 Robert Dee의 고소 내용을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 Sharp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원고인 Robert Dee는 프로 테니스 선수로서 공식적으로 참가한 5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패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가 참가한 경기들은 ITF(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와 ATP(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에서 주관하여 세계 랭킹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경기였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그의 54경기 연속 패배 기록은 세계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고, 그의 랭킹 포인트 역시 공식 집계 이후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세계 최악’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를 수식하는 언론의 표현은 사상 유례가 없는 그의 연속 패배 기록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국 대법원 “특정 언론사의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위” 8년간 숨겨왔던 BBC 인기 프로그램 캐릭터 공개

영국 대법원은 「BBC」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 하나인 〈Top Gear〉에 등장하는 미스터리 운전자, 스티그(Stig)의 정체체를 놓고 「BBC」와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BBC」는 지난 8년간 인기 프로그램 〈Top Gear〉에서 헬멧을 쓰고 등장하는 스티그의 정체체를 밝히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스티그의 정체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스티그가 미지의 인물로 남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며, 스티그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캐릭터로 남아있다. 그러나 9월 16일에 발간 예정인 Ben Collins(전 포뮬러3 선수)의 자서전에 그가 지난 7년간 스티

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담길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BBC」는 소문 확인 이를 만에 Collins 자서전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Morgan 판사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끝에 「BB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특정 언론사의 이익이 상충한다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표현의 자유가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며, 개인의 경험을 출판하는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BC」가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계란 한 판의 논란, The Sun의 정정보도로 마무리

영국의 PCC(Press Complaint Commissions)는 9월 3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일간지 「The Sun」이 보도한 ‘유럽연합, 계란 묶음 판매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보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일간지가 정정보도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The Sun」은 2010년 6월 27일자 신문 10면에 “유럽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판매되는 모든 식료품들은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질 것이며, 따라서 계란을 6개나 12개 단위로 상자에 담아서 파는 행위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불만신청인인 Ray Merrell은 불만접수 신청이유에 대해

“왜곡된 보도 내용으로 인해 독자들이 하여금 EU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CC의 중재로 「The Sun」은 정정보도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9월 3일자 신문 4면에 ‘EU는 영국에서 계란을 묶음으로 파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EU가 추진하는 새로운 음식물 판매에 대한 법안은 계란이나 빵 등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매 행위를 금지할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